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57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4
2.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8
3. 주요 조문별 검토	14
가. 정의(안 제2조)	14
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등 (안 제3조~제11조)	21
다. 신고 및 실태조사 등(안 제12조~제14조)	25
라. 의무 및 벌칙(안 제16조~제20조)	28
마. 부칙	3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2.

다. 회 부 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채권 등을 강매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채권 등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일본 등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또한 정부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1971년과 1974년에 제정하여 재산청구권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였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나 홍보 부족 등으로 미쳐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음.

이에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을 말하며, “정부보상”이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함(안 제2조).

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

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등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신고를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그 유가증권 등을 양도·양수한 자,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채권을 구매하였으나, 일제의 패전 이후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또한 1965년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여 일본에 대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비록 정부가 1971년에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과 1974년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통하여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한 바 있으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민간청구권과 정부의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후 적절한 보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제정안은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정의하여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위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사무처의 설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보유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목적 (제1조)	○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청구권의 정확한 실태 및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시된 정부보상의 실태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정의 (제2조)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 및 제7호의 경우 제외)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법인 포함)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다만,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果實)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 중 정부 지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미 보상된 부분은 제외함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 2.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 유가증권 가. 일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나. 일본 저축권 다. 일본국의 지방채 라. 일본국이 발행한 군표 마.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 이하 같음)을 둔 일본국 법인이 발행한 주권, 사채 및 유가증권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 5. 금융조합 발행의 예금증서 및 출자증권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구 분	주요 내용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 정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우편저금, 진체저금(振替貯金) 및 우편위체(郵便爲替)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조선총독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나. 국채 및 저축권 다. 우편저금, 진체저금 및 위체저금(爲替貯金) 라. 해외위체저금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12. 제3조에 따른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가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 ‘정부보상’이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의미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위원회 (제3조~제10조)	○ 구성: 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국무총리, 15명 이내의 위원 ○ 업무: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조사, 정부보상금의 규모에 대한 조사 등 ○ 활동기간: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 다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사무처의 설치 (제11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둬.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유 신고 (제12조)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가진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실태조사 (제13조·14조)	○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관계인·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조회, 현장조사, 감정 의뢰 등을 할 수 있음. ○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 등이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해야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등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

구 분	주요 내용
	민간재산청구권 및 정부보상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무원 등의 파견 (제15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비밀준수의무,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6조·제17조)	○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사람의 비밀준수의무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벌칙 및 과태료 (제19조·제2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상금 신청 목적으로 민간재산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를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 및 이를 알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 -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및 이를 알면서 보상금을 신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감정을 한 자 -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조화에 거짓으로 회신한 자 -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참고로, 제17대·제18대·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관련 과거 발의 법률안 >

국회	법률안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제17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원웅의원	176610	임기만료폐기
제18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	우제창의원	1804644	임기만료폐기
제20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종걸의원	2018901	임기만료폐기
제21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의원	2108485	임기만료폐기

2.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경제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무상 3억, 유상 2억)의 청구권자금을 제공받았고,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1966. 2.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제정 1971. 1. 19. 이하 “신고법”이라 함)」 및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1974. 12. 21. 이하 “보상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무상자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대일민간청구권을 보상을 실시한 적이 있음.

< 신고 및 보상금지급 실적(피징용사망자 보상금은 제외) >

구 분	건수	기준금액	보상금액
신고(A)	131,033건	1,636,736천엔	-
보상금지급(B)	74,967건	220,733천엔	66억2,199만원
B/A	57.2%	13.5%	-

주1: 보상금의 산정은 기준금액 1엔에 대하여 30원으로 하였음. 단, 100엔 미만의 청구권은 100엔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주2: 신고기간은 1971. 5. 21 ~ 1972. 3. 20

주3: 지급기간은 1975. 7. 1 ~ 1977. 6. 30

자료: 생명보험사자료 1권, 일제시대 보험 등 피해해결을 위한 국회 공청회 자료

이와 같이 「신고법」 및 「보상법」을 통해 1970년대에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이루어졌으나¹⁾,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정안이 규정한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1) 참고자료1 참조

첫째,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추가 보상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우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과거 보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합리적 보상액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²⁾.

그러나 정부는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태조사는 추가보상 실시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제정안을 통해 입법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둘째, 많은 국민들이 일제 강압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등 일부 민간재산청구권은 「신고법」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신고된 대일민간청구권 중 총신고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신고분 등은 증거자료 미비, 호적불명 등의 이유로 심사결과 수리되지 못하여³⁾ 일부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신고법상 신고기간이 10개월(1971. 5. 21 ~ 1972. 3. 20)로 짧

2) 제17대 국회, 제271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08.2.21)에서 논의된 내용이며, 이후('08.2.26)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정부 측에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3) 제90회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1974. 11. 27) 회의록

게 규정되었고,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신고 대상 민간재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등 과거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셋째, 청구권자금 중 재산권 보상에 사용된 금액은 약 66억 2,200만원으로 무상자금 3억달러의 원화환산액 약 1,077억원의 6.1%에 불과하며⁴⁾, 청구권자금 대부분은 경제개발을 위하여 사용되었음.

청구권자금은 일본국과 그 국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재산청구권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개별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제공된 것이며, 한·일경제협정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자금을 제공받음으로써 우리 국민이 민간재산청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상태임.⁵⁾

이처럼 개별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4) 재산권보상 66.2억원 외에 인적보상 25.7억원, 증권발행보상에 따른 이자지급 등 11.8억원 등 총 103.7억원을 보상에 사용하였음.

5) <한·일경제협정 제2조제1항>

“양 계약국은, 양 계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계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일경제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2-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 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포기하게 하고 청구권자금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민간청구권의 일부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국가발전 및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 자금의 극히 일부만을 개인에게 보상한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대일민간청구권과 정부보상 규모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보상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실태조사는 추가적인 보상을 전제로 하는데,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을 위한 재원인 청구권자금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임. 실태조사 이후 추가적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 및 심사결과, 보상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1970년대 당시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당시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둘째,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보상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제정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미 보상된 부분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보상액의 수준에 따라 기(既) 보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또한, 제정안은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를 가진 자가 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

는데, 1982년 보상 관련 법률이 폐지된 이후 소지하고 있던 증서를 폐기하거나 분실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를 신뢰하여 법률 폐지 이후 증서를 폐기한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 간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2005년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민관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추가 재산권 보상은 없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바 있고, 추가보상을 실시할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형평성 및 소요재원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정의 -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 및 제7호의 경우 제외)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법인 포함)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다만,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果實)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 중 정부 지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미 보상된 부분은 제외함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 2.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 유가증권 가. 일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나. 일본 저축권 다. 일본국의 지방채 라. 일본국이 발행한 군표 마.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 이하 같음)을 둔 일본국 법인이 발행한 주권, 사채 및 유가증권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 5. 금융조합 발행의 예금증서 및 출자증권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 정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우편저금, 진체저금(振替貯金) 및 우편위체(郵便爲替)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조선총독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나. 국채 및 저축권 다. 우편저금, 진체저금 및 위체저금(爲替貯金) 라. 해외위체저금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제 정 안
12. 제3조에 따른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가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 ‘정부보상’이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의미 ○ ‘정부보상금’이란 정부보상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의미

제정안은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법인 포함),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전(일부 예외)에 가졌던 청구권 중에서 금융기관 예입금, 유가증권, 예금, 해외송금, 출자증권, 납입보험료 및 수취 보험금, 지분, 채권 등 10개 호(號)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이자 등 과실 및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 중 정부의 지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미 보상된 부분은 제외하고 있음.

제정안에 규정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대상은 폐지된 「신고법」 제2조에 따른 신고대상과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에서 차이가 존재함.

우선, 한·일경제협정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대일 청구 8개 요강⁶⁾’에는 포함되었으나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청구권인 일본국이 발행한 군표나 금융조합 발행의 예금증서 및 출자증권, 조선총

6) 참고자료2 참조

독부에 대한 채권 등의 청구권을 추가하였음.

또한,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의 청구권을 포함시켰으며, 강제징용 등으로 인해 사망한 자의 채권은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에 의해 별도로 보상을 실시⁷⁾하고 있으므로 제외하였음.

< 보상대상의 범위 비교 >

제정안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비 고
제2조(정의) 대한민국 국민이 1945. 8. 15 이전(제1호 및 제7호의 경우 예외)에 일본국·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2조(신고대상의 범위) ①1947. 8. 15부터 1965. 6. 22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 8. 15 이전(제1호, 제5호 및 제7호 예외)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	○ 1947.8.15.부터 1965.6.22(협정서명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적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청구권을 추가 ○ 제정안 제1호·7호의 경우, 1945. 8. 15. 이후 취득한 청구권도 포함
1. 구 군정법령 제57호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	1. 구 군정법령 제57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국정부의 보조화폐	○ 금융기관 보유의 일본 은행권 및 일본국 정부의 보조화폐를 삭제
2. 1945. 8. 15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일본국의 국채 및 지방채 나. 일본 저축권 다. 일본국의 지방채	2. 1945. 8. 15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가. 일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 나. 일본 저축권 다. 일본국의 지방채	
라. 일본국이 발행한 군표		○ 신설
마.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법인이 발행한 주권, 사채 및 유가증권	라.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국정부가 보증한 사채	○ 공법인 이외 법인이 발행한 주권, 사채 등을 보상대상에 추가

7) 보상건수: 7.4만건, 보상금액: 6,438억원(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말 기준)

제정안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비 고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 일본국 소재 조건을 삭제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온 해외송금. 다만, 환거래결재분에 한하며 일본은행권 이외의 일본계 통화 및 일본군표는 제외한다.	○ 단서규정을 삭제
5. 금융조합 발행의 예금증서 및 출자증권		○ 신설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6. (제정안 제6호와 같음)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7. (제정안 제7호와 같음)	
8.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우편저금, 진체저금 및 우편위체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8.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가. (제정안 가목과 같음) 나. (제정안 나목과 같음)	
9. 조선총독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나. 국채 및 저축권 다. 우편저금, 진체저금 및 위체저금 라. 해외위체저금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신설
10. 제3조에 따른 일제강점하민간 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 신설
	5.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	

제정안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비 고
	탁한 기탁금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 ② 전항 제9호에 규정된 피징용 사망자의 기준과 그 유족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제동원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

제정안이 「신고법」에서 정한 청구권보다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거 「신고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기본적으로 한·일경제협정의 결과에 따라 포기된 우리 국민의 대일민간청구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정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고법」에서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청구권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 기간에 일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수립 이전이라도 일본정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바, 동 청구권을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민간재산청구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둘째, 제정안에서는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도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실태조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실태조사 이후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과정에서 형평성 등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청구권을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이자 등 과실(果實) 및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 중 정부의 지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미 보상된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예입」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
2.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 가. 일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 나. 일본 저축권
 - 다. 일본국의 지방채
 - 라. 일본국이 발행한 군표
 - 마.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 법인이 발행한 주권, 사채 및 유가증권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
5. 금융조합 발행의 예금증서 및 출자증권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 정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우편저금, 진체저금(振替貯金) 및 우편위체(郵便爲替)
 -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조선총독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 나. 국채 및 저축권
 - 다. 우편저금, 진체저금 및 위체저금(爲替貯金)

제 정 안

라. 해외위체자금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10. 제3조에 따른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가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② 이 법에서 “정부보상”이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정부보상금”이란 제2항에 따른 정부보상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말한다.

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등
(안 제3조~제11조)

제 정 안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업무: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조사, 정부보상금의 규모에 대한 조사, 실태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 - 활동기간: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단, 위원회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1회 한정) -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둠

제정안은 민간재산청구권 대상 및 규모, 정부보상금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의결을 통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는 현재 담당 행정기관이 부재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위원회의 임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의결로서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범위가 대일 청구 8개 요강의 범위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와 신속한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이 단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활동 기간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강제동원조사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두고 활동 기간을 약 1년 9개월(제정 시점: 2010.3.2. 위원회 존속기한: 2011.12.31.)로 정하였으나, 피해조사가 미진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1년 연장(위원회 존속기한: 2012.12.31.)하였고, 당초 예상했던 위원회 업무를 활동기간까지 종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추가 연장한 바 있음⁸⁾.

8) 「강제동원조사법」 제정 당시(2010.3.22.) 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활동 기간을 정하였으나, 피해조사가 미진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강제동원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8.4.)을 통하여 활동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로, 당초 예상했던 위원회 업무가 종료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강제동원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2.30.)을 통하여 활동 기간을 2015년 6월 30일로 연장함.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조(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조사 2. 정부보상금의 규모에 대한 조사 3. 실태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3.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제 정 안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신고 및 실태조사 등(안 제12조~제14조)

제 정 안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보유 신고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실태조사의 실시 - 위원회는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의 조치, 관계인·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현장조사, 감정 의뢰를 할 수 있음 -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등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및 정부보상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정안은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를 위한 전제로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신고가 필요하며, 실태조사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진술 청취, 현장조사,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위원회가 「신고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재 「신고법」은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폐지된 법률에 기반하여 신고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고법」과 제정법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범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신고법」에 따른 신고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2조(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보유 신고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밖의 증거에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증언 또는 진술 청취 2.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3. 자료나 물건 감정 등을 위한 현장조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로부터 자료나 물건의 제출,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열람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 등이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등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및 정부보상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의무 및 벌칙 등(안 제16조~제20조)

제 정 안

○ 비밀준수의무

- 위원회 위원과 직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은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신고할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반입한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

2.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을 허위로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정안은 비밀준수의무, 유사명칭 사용 금지, 형법상 수뢰죄⁹⁾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위원회는 정부의 대일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서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조사하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위원회 사칭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음으로, 벌칙 조항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이후 이루어질 보상금 수령을 예상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유가증권을 국외로부터 반입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한편, 제정안 제2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

9)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로 회신한 자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규정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강제동원조사법」¹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10) 「강제동원조사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6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신고할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반입한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 2.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을 허위로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조화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마. 부칙

제 정 안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가능 ○ 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특례 - 이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봄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입법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공포 후 시행일까지 6개월의 기간을 두는 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신속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 시행 전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개시(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되지 않았으나 위원회가 구성(공포 후 6개월이 경과 전)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150

참고 1

대일민간청구권 보상 실적 [기획재정부]

○ '78.5월 현재 보상 지급결정 103,281건 중 83,519건(80.9%), 지급결정액 9,524,787천원 중 9,187,693천원(96.5%) 지급

- 미지급분 19,762건은 지급 청구기간내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

구분	전수		보상액		비고
	(명)	비중(%)	(천원)	비중(%)	
1. 총신고	109,540				○ 신고액: 1,636,736천엔
2. 신고수리	103,324				
- 재산	94,414				
- 인명	8,910				
3. 보상제외	46				○ 제외내용 - 금융기관 9건, 1,391,674천엔 - 법인, 단체 37건, 6,200천엔
- 재산	46				
- 인명	-				
4. 보상금 지급결정	103,281	100	9,524,787	100	
- 재산	94,371	91.4	6,851,787	71.9	
- 인명	8,910	8.6	2,673,000	28.1	
5. 보상금 지급	83,519	80.9	9,187,693	96.5	○ 보상내용 - 현금: 6,709,201천엔 - 증권: 2,473,350천엔
- 재산	74,967	72.6	6,622,093	69.5	
- 인명	8,552	8.3	2,565,600	27.0	
6. 청구권 소멸	19,762	19.1	337,094	3.5	
- 재산	19,404	18.8	229,694	2.4	
- 인명	358	0.3	107,400	1.1	

* 최종 보상 수치임

참고 2

대일 청구 8개 요강 주요내역

	청 구 항 목	요 구 액
제1항	지금(地金)과 지은(地銀)	금249톤, 은67톤
제2항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1,448백만원
	1. 채신국관계	
	가.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위체저금) 등	1,197백만원
	나. 국채 및 저축채권 등	제5항에 포함
	다.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135백만원
	라. 해외위체저금 및 채권	70백만원
	마. 태평양미육군 총사령관 포고3호에 의하여 동결된 한국수취금	46백만원
	2, 3, 4 등은 토의 유보	
제3항	45.8.9 이후 한국으로부터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청구	
	1. 조선은행본점으로부터 동경지점에 진체 송금된 금품	제5항에서 설명
	2. 기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본에 송금된 금품	토의유보
제4항	법인의 재일본 지점 재산	유보
제5항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자 미수금·보상금 등	11,385백만원+364백만불
	1. 유가증권	8,765백만원
	가. 일본국채	7,371백만원
	나. 조선식량증권	152백만원
	다. 일본저축권	19백만원
	라. 일본정부 보증사채	833백만원
	마. 일본지방채	1백만원
	바. 일본사채	262백만원
	사. 저축 및 보국채권	4백만원
	아. 기타증권	93백만원
	자. 일본주식	30백만원
	2. 일본계통화	1,525백만원
	가. 일본은행권	1,498백만원
	나. 일본정부지폐	26백만원
	다. 일본군표	0.2백만원
	라. 일본은행소액지폐	0.2백만원
	마. 중국중앙준비은행권	1백만원
	3. 피징용자 미수금	237백만원
	4.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1,032,684명)	364백만불
	가. 사망자(1,650\$ × 77,603명)	128백만불
	나. 부상자(2,000\$ × 25,000명)	50백만불
	다. 생존자(200\$ × 930,081명)	186백만불
	5. 한국인의 대일본정부청구 은급	306백만원
	가. 연금 35,120명	290백만원
	나. 일시금 20,268명	16백만원
	6. 기탁금	114백만원
	7.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기타는 6항에서)	438백만원
제6항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및 개인에 대한 권리 행사	금액으로서 요구가 아님
제7항	제과실의 반환청구	
제8항	전기반환 및 결제는 협정성립 후 6개월내에 종료할 것	
합계	금액으로 요구한 개별항목 합계	12,833백만원+364백만불 =1,220백만불

자료: 국무조정실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참고 3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의 범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이하 “대일민간청구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이 표를 포함한다)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중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국정부의 보조화폐
 2. 1945년 8월 15일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 가. 일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
 - 나. 일본저축권
 - 다. 일본국의 지방채
 - 라.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의 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국정부가 보증한 사채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온 해외송금. 다만, 환거래결재분에 한하며 일본은행권 이외의 일본계 통화 및 일본국표는 제외한다.
 5.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 가. 우편저금·진체저금 및 우편 위채
 -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사망자”라 한다)
- ②전항제9호에 규정된 피징용사망자의 기준과 그 유족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이 법에 의한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부처의 1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2. 금융기관의 임원
3. 청구권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증거 및 자료의 적부심사
2.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업무에 따르는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증거조사등) ①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한 증언의 청취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증인의 위원회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업무·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직원은 재무부소속 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 직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업무의 취급) 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및 신고기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가진 자(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는 이 법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기타 증거에 미비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그 정을 알면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
2.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제1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반국가적 목적으로 제2조 각호에 계기한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증서를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
2. 전호의 정을 알면서 그 반입된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

②전항의 행위의 목적이 된 물건등은 이를 몰수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도 전2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4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이하 "청구권"이라 한다)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대상) ① 청구권의 보상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신고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및 자료의 적부를 심사하여 당해 청구권신고의 수리가 결정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관이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조흥은행
2. 한국식산은행
3. 대한금융조합연합회
4.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
5.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
7.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② 법인 기타 단체가 보유하는 청구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청구권신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 기타 단체에 속하는 것
2.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자에 속하는 지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거 및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

③ 청구권신고에 의하여 청구권을 신고한 자(이하 "청구권신고자"라 한다)가 청구권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청구권신고자가 청구권자로부터 보상금수령의 위임을 받았거나 청구권의 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기타 단체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수령의 위임 및 청구권의 상속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상의 방법) ① 청구권의 보상은 보상금의 지급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이하 "청구권보상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보상금
2. 청구권보상금 중 30만원까지의 금액과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1만원미만의 금액
- ③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청구권보상금) ① 청구권보상금은 일본국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30원으로 한다. 다만, 일본국통화 100엔미만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일본국통화 100엔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청구권신고법 제2조제1항제9호의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청구권보상금은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청구권보상금지급의 결정통지) 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당해 청구권자 또는 청구권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증권의 발행) ① 재무부장관은 청구권의 보상을 위하여 보상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증권(이하 "청구권보상증권"이라 한다)은 1년거치후 3연간에 분할하여 상환하며 이율은 년 5푼으로 한다.

③청구권보상증권의 발행·상환 기타 청구권보상증권에 관한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제7조(증거조사등) 재무부장관은 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권자·청구권신고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당해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검사·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①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사무국의 조직·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직원은 재무부소속공무원이나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 직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업무의 위임) 재무부장관은 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청구권의 소멸) 청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1. 청구권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청구권의 상속인이 없는 때
3.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4. 청구권자 또는 청구권신고자가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청구권신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

제11조(권리의 보호) 청구권은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5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되는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또는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무상자금”이라 함은 협정 제1조1(a)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차관자금”이라 함은 협정 제1조1(b)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원화자금”이라 함은 무상자금과 차관자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청구권자금”이라 함은 무상자금·차관자금 및 원화자금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거량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재·시설품·부분품·부속품(임업시설의 경우는 묘목·축산업시설의 경우는 종축을 포함한다) 또는 시운전에 소요되는 원료예비품과 이들 자본재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 또는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원자재”라 함은 원료·반제품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용역”이라 함은 특허권 기타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수용자”라 함은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도입한 자본재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수용자의 자격이 해제되기 이전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금사용제한) 청구권자금은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국민(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자금사용기준) ①무상자금은 농업·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차관자금은 중소기업·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원화자금은 전2항에 규정한 사업의 지원 또는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5조 (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 ①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청구권자금특별회계를 둔다.

②전항의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청구권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장관과 경제계·학계·언론계·법조계등 각부문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직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공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의결사항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구권자금을 사용할 대상사업 및 그 사업계획
2. 청구권자금에 의한 구매 및 도입절차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청구권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가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과잉시설, 략후된 산업시설,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생산물 및 일본지역에서 구매함이 현저히 불리한 생산물과 기타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아니하거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산업시설의 도입을 의결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도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의 결과 가부동작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 및 그 배우자나 그들의 친족 또는 가족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심사) ①위원회의 의결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심사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사를 할 때에는 재심사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가 재심사청구를 이유없다고 의결한 때에는 원의결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절단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이하 “사절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협정 제1의정서 제5조에 규정하는 사항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절단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보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연도실시계획의 확정공고 및 연도사용계획의 국회동의) ①경제기획원장관은 협정 제1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실시계획안(이하 “무상자금사용연도실시계획안”이라 한다)과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5의 규정에 의한 연도실시계획안(이하 “차관자금사용연도실시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무상자금의 연도사용계획안은 부문별·사업별로 금액을 계상하고, 차관자금의 연도사용계획안은 부문별·사업별로 업체를 표시하고 금액을 계상하여 각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무상자금사용연도실시계획안과 차관자금사용연도실시계획안이 협정 제1

의정서 제1조 및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5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개모집)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자금사용연도실시계획과 차관자금사용연도실시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계획의 실시(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분은 제외한다)를 위하여 청구권자금으로 자본재 및 용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를 공개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전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자금사용등의 허가)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권자금의 사용 및 도입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합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 적합한 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구권자금의 사용 및 도입에 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원자재도입을 위한 자금사용에 관하여는 그 품목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합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한국은행총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금을 공매하고 그 사용 및 도입에 관한 허가를 한다.

제16조 (도입보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원자재 또는 용역을 도입한 자는 도입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도입보고서와 도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마다 자본재의 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을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 및 시정) ①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하여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설명서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목적변경등의 승인) 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 또는 용역을 허가된 목적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도입된 자본재·용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양도·임대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②수용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수용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9조 (채권행사의 승인) ①이 법에 의하여 도입된 수용자의 자본재·용역 및 이와 직접 관련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행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전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매각처분) ①주무부장관은 수용자가 허가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업체를 매각할 뜻을 수용자에게 통고하여 정해진 기일내에 이의를 제출하게 하고 그 이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정하여 그 기업체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②수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미리 매수인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매각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동전) ①수용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정해진 기일내에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수용자에 갈음하여 당해 기업체를 매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며 그 시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전수용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직권의 위임)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4조·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직권과 기타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수용자의 자격해제)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된 수용자의 자본재 또는 용역이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운영되는 날로부터 5년이상이 경과된 때에는 그 수용자의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 (보칙) ①협정의 부속문서인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은 외자도입촉진법·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및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과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②이 법중 외자관리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대하여는 무역법중 수입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벌칙) ①청구권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상황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2항 내지 전항에 규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조 (가중처벌) ①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허가를 받아 자본재·원자재 또는 용역을 도입하는 자가 그 도입에 관하여 청구권자금을 외국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 제17조·제

20조 내지 제23조·제25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청구권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 도피시킨 경우에 그 가액이 미합중국불 5만불 상당 이상일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 그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전항의 죄의 목적이 된 금품 기타 물건은 몰수한다. 몰수하는 것이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제17조제1항·동조제3항·제18조 및 제20조제2항·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 (고발) ①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죄는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전항의 고발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결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예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결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결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결국은 양 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결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결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채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채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채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채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채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채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채약국의 정부가 타방채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채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채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채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채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채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